

2026

소방시설법, 위험물관리법  
소방공무원 공채/경채  
**고득점 소방관계법규2**

엠북 소방

공부혁명!  
[mbook.kr](http://mbook.kr)

- ◆ PDF 전자책
- ◆ 법, 시행령, 시행규칙, 별표 종합정리
- ◆ 최근 법령 개정 반영, 기출 지문 포함
- ◆ 3시간 38분 완성, 암기코드 제공

도서명 : 고득점 소방관계법규2

ISBN : 979-11-7393-113-0

발간일 : 2026-01-27

형식 : 전자책(PDF)

저자 : 김병연 교수

출판사 : 엠북

홈페이지 : <https://www.mbook.kr/>

이메일 : by4782@gmail.com

정가 : 17,000원



# 고득점 소방관계법규2

## [목차]

### 제1편 소방시설법(p4)

제1장 총칙(p5)

제2장 소방시설등의 설치/관리 및 방염(p21)

제3장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p56)

제4장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시설관리업(p64)

제5장 소방용품의 품질관리(p73)

제6장 보칙(p78)

제7장 벌칙(p85)

### 제2편 위험물관리법(p87)

제1장 총칙(p88)

제2장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제한(p95)

제3장 제조소등 위치·구조 및 설비 기준(p108)

제4장 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p140)

제5장 위험물시설의 안전관리(p148)

제6장 위험물의 운반 등(p167)

제7장 감독 및 조치명령(p171)

제8장 보칙(p173)

제9장 벌칙(p181~184)

## [비고]

회색 형광펜은 법조문 제목

**노란색 형광펜은 암기코드 등**

검은색은 법

보라색은 시행령

갈색은 시행규칙

초록색은 최근(1~2년내) 개정 내용

하늘색은 소방공무원, 소방자격증 시험 기출 문제

붉은색은 소방공무원, 소방자격증 시험 빈출(2~3회 이상) 문제

**노란색 형광펜은 중요**

**하늘색 형광펜은 중요도 상**

**초록색, 회색 형광펜은 중요도 최상**

(Copyright) 공부혁명 엠북(mbook.kr)

## 제1편 소방시설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

### [용어/약어]

부령은 행정안전부령

청장은 소방청장

본부장은 소방본부장

서장은 소방서장

시도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시도지사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기술원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자

기술사는 소방기술사

관리사는 소방시설관리사

관리업은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증/수첩은 등록증, 등록수첩

특급은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특급 안전관리자

진열은 판매 목적으로 진열

평가단은 성능위주설계평가단

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

## 제1장 총칙

1~5조

### 1. 목적

- 소방시설등 설치/관리, 소방용품 성능관리
- 국민 보호, 공공 안전/복리 증진

### 2. 정의

가. 소방시설(소경/피/수활)은 소화, 경보, 피난구조, 소화용수, 소화활동 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함

- 단, 방화설비 제외

나. 소방시설등(이하 시설등)은 소방시설, 비상구, 방화문, 자동방화셔터

다. 특정소방대상물(이하 특정대상물)은 건축물 등의 규모, 용도, 수용인원을 고려해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통령령상 소방대상물

라. 화재안전성능은 화재예방, 피해최소화 위한 대상물 재료, 공간, 설비 성능

#### 마. 성능위주설계는

- 재료/공간/이용자/화재 특성 종합 고려
- 공학적으로 화재 위험성 평가

#### 바. 화재안전기준

- 성능기준은 재료, 공간, 설비 안전성능; 청장이 고시
- 기술기준은 성능기준 충족 규격, 수치, 시험방법; 청장이 승인

사. 소방용품(이하 용품)은 시설등 구성 또는 소방용 사용 제품/기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아. 무창층은 지상층 중 다음 요건 모두 갖춘 개구부 면적 합계가 해당 층 바닥면적의 1/30 이하

- 1) 50cm 이상의 원 통과
- 2) 해당 층 바닥면에서 개구부 밑부분까지 높이 1.2m 내
- 3) 도로나 차량 진입 가능한 빌터 향할 것
- 4) 화재시 쉽게 피난하도록 창살 등 장애물 미설치
- 5) 내/외부에서 쉽게 부수거나 열 수 있을 것

자. 개구부는 건축물에서 채광, 환기, 통풍, 출입 등을 위해 만든 창, 출입구, 이와 비슷한 것

차. 피난층은 곧바로 지상으로 갈 수 있는 출입구가 있는 층

### **3. 국가등의 책무**

- 시설등 설치/관리, 용품 품질 향상 정책 수립/시행
- 신 소방 기술/기준 개발, 조사/연구, 전문인력 양성
- 정책 수립/시행 행정/재정 지원

### **4. 관계인의 의무**

- 시설등 기능/성능 보전/향상, 이용자 편의/안전성 제고
- 매년 재원 확보
- 국가등 활동에 적극 협조
- 점유자는 소유자/관리자에 적극 협조

### **5.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위험물 제조소등 안전관리와 시설등 설치기준은 위험물안전관리법 따름

## **6. 소방시설(대통령령)**

### **가. 소화설비**

- 물 등 소화약제 사용

#### **1) 소화기구**

- 소화기
- 간이소화용구
- 에어로졸식, 투척용, 소공간용 및 소화약제 외의 것 이용
- 자동확산소화기

#### **2) 자동소화장치**

- 주거용/상업용 주방
- 캐비닛형, 가스, 분말, 고체에어로졸

### 3) 옥내소화전(호스릴 포함)

### 4) 스프링클러등

- 스프링클러
- 간이스프링클러(캐비닛형 포함)
- 화재조기진압용

### 5) 물분무등소화설비

- 물분무, 미분무, 포, 이산화탄소,
- 할론, 할로겐화합물, 불활성기체,
- 분말, 강화액, 고체에어로졸

### 6) 옥외소화전

#### 나. 경보설비: 화재발생 통보

- 단독경보형 감지기
- **비상경보설비**(비상벨, 자동식사이렌)
- **자동화재탐지설비**
- **시각경보기**
- 화재알림설비
- 비상방송설비
- **자동화재속보설비**
- **통합감시시설**
- **누전경보기**(단, 누전차단기 제외)

## - 가스누설경보기

### 다. 피난구조설비

#### 1) 피난기구

- 피난사다리
- 구조대
- 완강기
- 간이완강기
- 화재안전기준으로 정하는 것

#### 2) 인명구조기구

- 방열복, 방화복(안전모, 보호장갑, 안전화)
- 공기호흡기
- 인공소생기

#### 3) 유도등

- 피난유도선
- 피난구유도등
- 통로유도등
- 객석유도등
- 유도표지

#### 4) 비상조명등, 휴대용비상조명등

### 라. 소화용수설비: 물 공급/저장

- 상수도소화용수설비

- 소화수조/저수조 등

## 마. 소화활동설비: 화재진압, 인명구조

- 제연
- 연결송수관
- 연결살수
- 비상콘센트
- 무선통신보조
- 연소방지

## 7. 특정소방대상물

- 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

### 1) 공동주택

- 아파트등은 5층 이상
- 연립은 660 초과, 4층 이하
- 다세대는 660 이하, 4층 이하
- 연립/다세대는 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시 각각의 동으로 봄
- 기숙사는
- 학교/공장 학생/종업원 용
-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가 전체의 50% 이상
- 학생복지주택, 공공매입임대주택 중 독립 주거 형태 아닌 것 포함

### 2) 근린생활시설(이하 근생)

가) 1,000 미만

- 슈퍼마켓, 일용품 소매점
  - 의약품/의료기기 판매소, 자동차영업소
  - 1,000 이상이면 상점
- 나)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기원, 노래연습장, 150 미만 단란주점
- 다)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세탁소
- 공장에 부설된 것 제외
- 라)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원, 산후조리원, 안마원, 안마시술소
- 마) 500 미만
- 탁구장, 테니스장, 체육도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물놀이형 시설
  -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 출판사, 서점
  - 제조업소, 수리점
  - (인터넷컴퓨터/복합유통) 게임제공업 (500 이상은 상점)
  - 학원/고시원(단, 자동차/무도학원 제외)
- 바) 300 미만 공연장, 종교집회장
- 사) 사진관, 표구점, 독서실, 장의사, 동물병원, 총포판매사

### 3) 문화 및 집회시설

- 가) 균생아닌 공연장
- 나) 균생아닌 집회장
- 예식장, 공회당, 회의장, 마권 발매/투표소
- 다) 관람석 1,000 이상 관람장
-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자동차 경기장, 체육관, 운동장
- 라) 전시장
-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견본주택

마) 동식물원, 수족관

#### 4) 종교시설

- 근생아닌 종교집회장
- 봉안당

#### 5) 판매시설

- 내부 근생 포함
- 도매시장은 농수산물 도매시장/공판장
- 소매시장은 시장, 대규모점포
- 전통시장은 노점 제외
- 상점

#### 6) 운수시설

- 여객자동차터미널
- 철도/도시철도, 정비창 등 관련 시설
- 공항, 항공관제탑
- 항만, 종합여객시설

#### 7) 의료시설

- 병원: 종합/치과/한방/요양 병원
- 격리병원: 전염병원, **마약진료소**
- 정신의료기관
-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 8) 교육연구시설

가) 학교

- a) 초/중/고, 특수학교 교사, 체육관, 급식시설, 학숙소
- b) 대학 교사, 학숙소
- (비고) 교사는 병설유치원 제외
- 나) 교육원/연수원
- 다) **직업훈련소**
- 라) 학원
  - 단, 균생, 자동차/정비/무도학원 제외
- 마) 연구소/시험소/계량계측소
- 바) 도서관

## 9) 노유자 시설

- 가) 노인
  -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 재가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 포함)
  -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 나) 아동: 복지시설, 어린이집, (학교병설)유치원
- 다) 장애인 거주/재활 시설
  - 장애인 심부름센터, 한국수어통역센터, 점자도서, 출판시설 제외
- 라) 정신질환자 재활/요양 시설
  - 생산품판매시설 제외
- 마) 노숙인
  - 노숙인복지시설 중
    - 일시보호/자활/재활/요양 시설, 쪽방상담소
    - 종합지원센터
- 바) 결핵환자/한센인 요양시설

## 10) 수련시설

- 생활권은 청소년 수련관/문화의집/특화시설
- 자연권은 청소년/야영장
- **유스호스텔**

### 1) 운동시설

- 균생아닌 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물놀이형 시설
- 관람석이 없거나 1,000 미만 체육관/운동장

### 2) 업무시설

- 공공업무시설은 균생아닌 국가/지자체 청사, 외국공관
- 일반업무시설은 균생아닌 금융업소, 사무소, 신문사, **오피스텔**
- 주민자치센터(동사무소),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소방서, 119안전센터, 우체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국민건강보험공단
- 마을 회관, 공동 작업소/구판장
-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대피소, 공중화장실

### 3) 숙박시설

- 일반형, 생활형, 균생아닌 고시원

### 4) 위락시설

- 균생아닌 단란주점
- 유흥주점, 비슷한 것
- 테마파크, 비슷한 것(근생은 제외)
- 무도장/무도학원, 카지노

## 5) 공장

- 물품 제조/가공/수리
- 세탁, 염색, 도장, 표백, 재봉, 건조, 인쇄

## 6) 창고시설

- (냉장/냉동)창고, 하역장, 물류터미널, 집배송시설

## 7) 위험물저장/처리시설

- 제조소등
- 가스시설은
- 산소나 가연성 가스 제조/저장/취급 및
- 지상노출 탱크 100톤 이상 또는 30톤 이상 저장 탱크 있을 것

## 8) 항공기/자동차 시설(건설기계 포함)

- 항공기 격납고
- 차고, 주차용 건축물, 철골조립식/기계식 주차시설
- 바닥면이 조립식이 아닌 것 포함
- 세차, 폐차, 자동차 검사/매매/정비
- 운전/정비학원
- 건축물 내 주차장
- 필로티/지하 포함
- 단독주택, 50세대 미만 연립/다세대 제외
- 차고/주기장

## 9)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 단, 동식물원 제외